

청주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1나57265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2. 9. 29.

판 결 선 고 2022. 11. 24.

제1 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10. 7. 선고 2021가단23691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충주시 D 대 24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20.

2. 1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20. 7. 3. 접수 제280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주식회사 E의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2012년경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거쳐 양수하고, 2016. 12.경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52640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7. 1. 23. ‘C은 원고에게 2,305,123원 및 그중 1,066,335원에 대하여 2006.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C의 여동생 F의 배우자인 G은 2017. 1. 26. 이 사건 지급명령의 정본을 동거인으로서 수령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C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7. 2. 10. 확정되었다.

다. C의 부친인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20. 2. 19.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인 망인의 배우자 피고(상속분 3/13), 망인의 자녀 I, J, C, K, F(상속분 각 2/13)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단독 소유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7.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20. 7. 3. 접수 제28096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 이외에도 자산유동화전문 회사에 대하여 원금 2,900만 원 이상의 채무 등이 있었고, 2016. 2.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카불484호로 주식회사 L에 대한 210만 원 및 지연이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는 결정을 받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5, 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무렵인 2020. 2. 19.경 이전에 C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라 2,305,123원 및 그중 1,066,33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위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2788 판결 등 참조).

나)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C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도록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그와 같은 행위의 결과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C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C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당시 그러한 내용의 협의가 C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C의 채무가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지급명령을 공동상속인인 F의 배우자가 수령하였고, 당시 C은 F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C의 모친으로서 F 등 공동상속인과 함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면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20. 2. 1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상회복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에 따라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20. 7. 3. 접수 제280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송인권, 판사 고진흥, 판사 성찬용